

## 명예퇴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교직원이라 함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일반직·기술직·기능직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신청자격)** 명예퇴직은 본교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에게 허가한다. 단,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신청의 제한)** ① 매학기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교원의 경우 연구년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허가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명예퇴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신청절차)** ①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희망학기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직원은 사무처장에게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신청서를 접수한 교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예퇴직 허가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명예퇴직일은 매학기 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총장은 학교 운영상의 이유로 해당 학기 명예퇴직 신청접수를 유예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 신청서 접수 마감일 1개월 전에 유예 사실을 전 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 및 결정)** ① 위원회는 명예퇴직 신청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퇴직대상자를 선정, 총장에게 추천한다.

1. 공상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가 곤란한 교직원
2. 잔여근무 기간이 짧은 교직원
3. 상위직급 교직원
4. 장기근속 교직원

② 총장은 위원회로부터 퇴직 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 결정한다.

**제8조 (결정통지)** 퇴직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교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은 그 결과를 소속 부

서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9조 (사직원 제출) 퇴직 대상자는 퇴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한다.

제10조 (수당) ① 명예퇴직자에게는 예산상 허용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퇴직당시 평균임금 × 정년 잔여월수 × 지급률]

단, 지급률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월수를 60개월로 하며, 정년 잔여월수 산정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 2항 본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평균임금이란 명예퇴직 예정일 전 1년간의 총급여(직책수당 및 보직수당 제외) 지급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 (수당지급시기)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12조 (수당의 수령권자) 명예퇴직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13조 (사무분장) 명예퇴직심사에 관한 사무는 교원은 교무처 교무팀에서, 직원은 사무처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08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제2항 개정<'08 제21차 교무위원회>)

##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제3항 개정<'08 제24차 교무위원회>)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 개정<'09 제26차 교무위원회>)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개정 <2012 제8차 교무위원회>)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제2항 개정 <2013 제17차 교무위원회>)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제2항 개정 <2017 제18차 교무위원 회>)